

##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약

### 2.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약」(이하 ‘특약’ 이라 한다)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 이라 한다)에만 가입된 피보험자 등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사이에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 이라 한다)으로 전환(이하 ‘개인실손전환’ 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한다.

\*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 3. 개인실손전환에 관한 사항

가.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다.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한 경우 청약 당시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며, 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다만, 청약일 현재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실손에 가입한 자 (다만,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퇴직예정인 임직원은 퇴직예정임을 증명해야 한다)

2)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개인실손전환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함)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 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이전에 단체실손에 가입·종료한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3) 개인실손전환 청약 시 전환 후 개인실손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나이 이내인 경우

나. ‘가’의 2)에도 불구하고 ‘14.10.16.이후 단체실손을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경우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기간은 단체실손의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인실손전환 직전에는 단체실손의 ‘실손보장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단체실손을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이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 제도 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장형’으로 변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실손전환이 가능하며,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비실손보장형(정액형)’에서 보장받은 담보와 유사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으로 전환된다.

(예시) 비실손보장형(정액형):상해·질병 입원일당 담보 → 개인실손:상해·질병 입원담보

다. 회사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2) 또는 3)의 경우,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 동일한 조건이 없어 단체실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개인실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 1) 보장종목
- 2) 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라.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 보험금을 200만원(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에 대하여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한다.

\* 10대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마. 계약자가 ‘다’ 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라’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결정한다.

#### 4. 기타 사항

가. 다수의 회사가 단체실손을 분할하여 인수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해외발령 및 해외지사 파견 등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한 기간에 포함한다.

다.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이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단체실손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개인실손 전환 전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